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31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정책마련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명시(안 제2조부터 제3조)
- 나.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 다.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개정사항 추가 및 제외 요청 반영

라. 기타

-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원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지원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③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④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은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

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교부한 예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제5조제3항 관련)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	◦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동작구 상도로 152-1(상도동) (야간전용 일시쉼터 비공개)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 청소년건강센터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위기 십대여성 건강지원
	◦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구 관천로113(신림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구 도봉로98길 33(변동)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운영(제4조)
  -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일시지원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청소년건강센터)
  -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가격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비용추계기간 : 5년(2018년~2022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8년)	('18년)	('20년)	('21년)	('22년)		
세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320,659	330,279	340,187	350,393	360,905	1,702,423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786,046	809,627	833,916	858,934	884,702	4,173,225	
	늘푸른교육 센터운영	관악			447,782	461,215	475,052	489,303	503,983	2,377,335
		강북			298,085	307,028	316,238	325,726	335,497	1,582,574
	소계(b)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채수입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852,572	1,908,149	1,965,393	2,024,356	2,085,087	9,835,557

5. 덧붙이는 의견

- 위기 십대여성 지원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아님. 단,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3% 증가분을 적용하였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심효진(2133-504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사업명	내역	예산액	산출기초	
	<b>총 계</b>		<b>9,835,557</b>		
2018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1,198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29,789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69,67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20,659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04,633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1,33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4,406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지원활동비	71,26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54,41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786,04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4,08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03,702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47,78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5,11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52,973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298,085		
			<b>합 계</b>	<b>1,852,572</b>		
2019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27,834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0,68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1,76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30,279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0,772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5,272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28,138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자원활동비	73,403	축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62,042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09,627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48,402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12,81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61,215	
		강북		자립학교 운영	149,46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57,56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07,028	
	<b>합 계</b>		<b>1,908,149</b>			
2020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34,66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1,603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3,915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40,187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17,095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39,33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1,98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자원활동비	75,605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시춘기클리닉	269,904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33,916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2,854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22,197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75,052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3,949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62,289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16,238		
	<b>합 계</b>			<b>1,965,393</b>		
	2021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1,709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2,551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6,132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50,393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23,608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3,510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35,942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자원활동비	77,873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시춘기클리닉	278,00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58,934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57,44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31,863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489,303		
		강북	자립학교 운영	158,568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67,158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25,726		
		<b>합 계</b>			<b>2,024,356</b>	
2022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48,960	직원 6명(센터장 1, 팀장2, 직원 3)

		운영비	33,528	제세공과금, 수용비, 임차료 등	
		사업비	78,416	일시보호(주,야간), 상담카페, 긴급구조 및 현장상담 등	
		소계	360,905		
	청소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	230,316	직원 5명(센터장 1, 직원 4)	
		운영비	147,815	공과금, 수용비, 건물관리비 등	
		사업비	140,020	의약품구입, 심리검사, 교재구입, 성교육장 운영 등	
		의료자원활동비	80,209	촉탁의료진 활동비, 의약품지원 등 지원사업 활동비	
		사춘기클리닉	286,34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물품구입비 등	
		소계	884,702		
	늘푸른 교육센터 운영	관악	자립학교 운영	162,163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341,819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503,983	
		강북	자립학교 운영	163,325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72,172	인건비(2명), 운영비, 사업비, 인턴활동비 지원 등
			소계	335,497	
	합 계			2,085,087	